

영 등 포 구 의 회
2005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2005. 7.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의안번호 : 제163호
- 제안일자 : 2005. 6. 22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9조제2호)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 신고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안 제15조제1항제8호 신설)

□ 관 련 법 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개정 준비중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다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안 제8조 제1항의 삭제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 안 제9조 제2호 삭제는 환경부고시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4조 제3항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15조 제1항 제8호에 신고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 신고 포상금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1 과태료부과 금액 『10만원 이상 300만원』을 『5만원 이상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포상금 『3만원 이상 30만원』을 『2만원 이상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은 관련 법령의 근거에 의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조례 제정이후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 까지의 위반 사업장 신고건수는 92건에 과태료부과금액은 1천 5백 4십만원이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44건에 3백 3십 4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7. 4

보 고 자 : 이 남 식